

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1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. 5. 10. 김희태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: 2023. 5. 1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3. 6. 02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 3. 2.)」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
-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각종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(2022. 12. 28.)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별표 4(국외여비 기준표)를 삭제하고, 별표 3(국내여비 기준표)을 「고성군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」으로 개정(별표 3)
나. 지방의원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
- 1) 출석정지: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(안 제8조제2항)
 - 2) 경고·사과: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(안 제8조제3항)
- 다. 준용 조문 개정(안 제9조)
-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⇒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1항제3호, 제2항,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,
「공무원여비 규정」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17호

- 입법예고 기간: 2023. 5. 12. ~ 2023. 5. 17.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관계 법령 저촉 여부: 해당사항 없음

○ 주요 내용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 3. 2.)」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 반영
- 의정비 지급 제한

구 분	내 용
○ 구 금	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 미지급
○ 출석정지(신설)	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☞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

○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질서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은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참조)

8. 토 론: 없음.

9. 심사결과: 2023. 6. 2. 원안가결